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매년 외부감사인에 의한 조합 회계감사 실시 및
조합 회계감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 임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523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매년 외부감사인에 의한 조합 회계감사 실시	2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2
1) 농림축산식품부 및 금융위원회	2
2) 농협중앙회	2
3) 공인회계사협회	3
나. 검토의견	3
1) 농업협동조합 감사 현황 및 개정안의 취지	3
2) 외부감사인 회계감사 주기 단축에 대한 검토	10
2. 조합 회계감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17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18
1) 농림축산식품부	18
2) 금융위원회	18

3) 농협중앙회	19
4) 공인회계사협회	19
나. 검토의견	19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현황 및 개정안의 취지	19
2) 조합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22
 [참고자료]	 3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임미애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4. 12. 16.
3. 회 부 일 : 2024. 12.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협의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4년에 1회 받는 것으로 하고 있어 전·당기 재무제표의 비교가 불가능하여 회계감사 기능이 상실되는 등 실질적인 감사 기능이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임.

지역농협은 지역 내 금융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합원을 비롯한 농민, 서민 등이 이용하고 있어 지역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같이 고도의 회계 투명성이 요구되므로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간 지역농협에서는 총 280건, 1,101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특별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음.

이에 자산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Ⅲ. 검토의견

1. 매년 외부감사인에 의한 조합 회계감사 실시

개정안은 자산 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이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4년마다 받도록 한 것에서 매년 받는 것으로 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 <u>조합장의 임기 개시일 직전</u> 회계연도 말의 자산 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은 <u>그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u>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 <u>직전</u> ----- ----- ----- ----- <u>매년</u> ----- ----- ----- -----.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및 금융위원회

필요성에 공감하며 개정안에 이견이 없음.

2) 농협중앙회

주식회사와 달리 내부감사 이외의 다양한 감독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감사시스템 고도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 비용 증가 등을 사유로 현행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공인회계사협회

현행 4년 주기의 외부회계감사는 전·당기 재무제표 비교가 불가능하여 실질적인 회계감사 기능이 작동하기 어려우므로 개정안과 같이 1년 주기로 단축이 필요함.

나. 검토의견

1) 농업협동조합 감사 현황 및 개정안의 취지

현행법은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 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500억원¹⁾) 이상인 지역농협은 그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²⁾(이하 ‘외부감사인’이라 함)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 제107조³⁾ 및 제112조⁴⁾는 각각 지역축협과 품목조합에 대해서

-
- 1) 제8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이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5백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 3) 제107조(준용규정) ① 지역축협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제3항·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및 제76조부터 제

도 동 조합(제65조의2)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지역농협, 지역축협 및 품목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임.

이에 따라 2024년 12월 기준 총 1,111개 조합 모두가 자산규모 총액 500억원 이상인 규모로 현행법에 따라 4년마다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의 대상이 됨.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의2제2항⁵⁾에 따라 자산총액 500억 미만 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장 임기 중 1회에 한하여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⁶⁾.

[외부회계감사 대상]

구분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합 계
전체 조합수*	916	116	79	1,111
전체 사무소 수	3,684	731	482	4,897
본 점	916	116	79	1,111
지 점	2,768	615	403	3,786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916	116	79	1,111
비율(%)	100%	100%	100%	100%

* 전체 조합수는 본점 기준

※ 자료: 농협중앙회 제출자료('25.1.20)

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후략>

- 4)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준용규정) ①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9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후략>
- 5)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②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지역농협의 경우 조합장 임기 중 1회에 한하여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청구한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회계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6)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 조합에 따라 실제 회계감사를 받은 조합은 없음.

연도별 외부 회계감사 수감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이후 동시조합장 선거 실시로 감사수감 시기가 4년 주기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특히 2023년 및 2024년 외부회계감사는 동시조합장선거로 외부 회계감사 수감대상이 없었으며, 2025년에는 1,092개소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가 예정되어 있음.

[연도별 외부회계감사 수감현황]

구분	'19	'20	'21	'22	'23	'24	'25(예정)
수감대상(개소)	4	1	1,072	24	-	-	1,092

※ 자료: 농협중앙회 제출자료('25.1.20)

한편, 조합은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외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조합 자체 감사와 중앙회의 조합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사를 받고 있음.

즉, 농식품부는 필요 시 조합에 대하여 농식품부 감독을 받는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금융감독원 역시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신용(상호금융)사업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고 있음. 또한, 농협중앙회 내 조합감사위원회는 2년마다 회원인 조합을 감사하고, 조합 자체적으로도 감사를 두어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매년 감사하고 있음⁷⁾

7) 이 밖에 지자체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62조(감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조합등을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조합에 대한 감사 현황]

구 분	외 부			내 부	
	농식품부	금융감독원	외부회계감사	조합감사위	자체감사
근거 규정	농협법 제162조제1항 농협법시행령 제46조제1항 농림축산 식품부 감사규정 제3조제1항 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제5호 ⁹⁾	농협법 제65의2제1항 ¹⁰⁾	농협법 제146조제1항 ¹¹⁾	농협법 제46조제6항, 감사규정 제4조제1항 ¹²⁾
대상 조합	전체 농협 (비회원 포함)	전체 농협 (신용사업수행)	전체 농협 (자산 500억 이상)	중앙회의 회원	해당 농협
주기	-	-	4년	2년 (상임감사를 두는 조합은 3년)	1년
감사 범위	감독을 받는 범위 내의 업무전반	신용(상호금융) 사업의 업무 및 재산상황	재무제표	농협의 재산 및 업무 집행상황	

※ 자료: 국회 법률정보시스템상 관련 법령 내용 재구성

8) 「**농업협동조합법**」 제162조(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등과 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6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1조의11제7항 및 제162조제1항에 따라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조합등과 중앙회·농협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제3조(감사의 주기) ① 장관이 실시하는 종합감사의 주기는 3년을 원칙(농업협동조합은 2년)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2. ~ 4. (생략)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 ~ 10. (생략)

10)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①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 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은 그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1) 「**농업협동조합법**」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①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에 대하여 2년(상임감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3년)마다 1회 이상 회원을 감사하여야 한다.

12) 제46조(임원의 직무) ⑥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지역농업협동조합 감사규정**」 제4조 ① 정기감사는 전번 감사기준일 다음날부터 금번 감사

그런데 조합에 대한 감사시스템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횡령·배임 및 부당대출 등의 금융사고가 매년 30건 이상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최근 5년(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합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649억 9,300만원에 달하고 있음.

[최근 5년 조합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횡령·배임	건수	8	12	20	22	10	72
	금액(백만원)	548	10,314	11,061	1,884	2,039	25,846
부당대출	건수	5	9	1	3	3	21
	금액(백만원)	5,600	2,322	213	350	20,186	28,671
기타	건수	38	18	13	21	18	108
	금액(백만원)	4,245	1,239	387	3,739	865	10,475
합계	건수	51	39	34	46	31	201
	금액(백만원)	10,393	13,875	11,662	5,973	23,090	64,993

* 징계·변상 심의일 기준으로 작성됨

※ 자료: 농협중앙회 제출자료('25.1.20)

이와 관련하여 조합 내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조합 차원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 왔음¹³⁾.

개정안은 농협의 내부통제 강화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조합에 대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의 주기를 4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외부통제 강화를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하려

기준일까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며,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정기감사는 결산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13) 2024년 농협중앙회 등 국정감사('24.10.18.) 시 임미애의원 지적: 농협의 지속적인 금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조합감사위원회 감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점 지적.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24.10.24.) 시에는 4년 주기의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 등 제도 보완 필요성 제시

는 취지로 이해됨.

또한, 지역농협은 지역 내 금융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합원을 비롯한 농민, 서민 등이 이용하고 있어 지역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농협의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24.10.8)으로 조합 상임감사 의무도입 대상 자산총액 기준이 확대(1조원 → 8천억원, '25.4.)되었고¹⁴⁾, 고위험·신종사고 등 선제적 탐지를 위한 감사시스템 고도화 추진('25 상반기)¹⁵⁾ 및 준법점검 기능 강화¹⁶⁾ 등 농협 차원에서도 자구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14)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③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에는 조합원이 아닌 상임감사 1명을 두어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의6 법 제45조제3항 단서(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이란 감사의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8천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2024.10.8.개정 2025.4.9.시행)

[상임감사 도입기준 강화에 따른 농축협 적용 현황('24년 말)]

총자산 1조원 이상	총자산 8천억원 이상	증 감
139개소	185개소	46개소

※ 자료: 농협중앙회 제출자료('25.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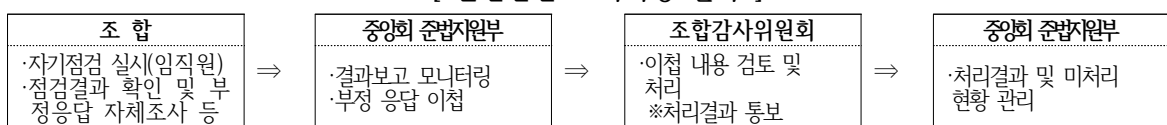
15)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역검사국에 분산된 전산감사 업무를 본부 집중화 추진하였으며('25년 중앙회 조직개편 반영), 고위험·신종사고 등 선제적 탐지를 위한 감사시스템 고도화* 추진 중

* 상시모니터링 룰(rule) 복잡화 및 탐지자동화, 위험징후 자동추출 모델 추가 발굴 및 고도화 등

※ 소요예산 : 총 20.8억원, 개발일정 : '24년 7월 ~ '25년 6월(12개월)

16) 조합은 준법점검 책임자를 지정하여 준법점검을 하고 있으며(정관례 반영 '24.1월), 중앙회의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준법점검 기능을 강화하였음

[준법점검 모니터링 절차]



※ 자료: 농협중앙회 제출자료('25.1.20)

참고로, 제19대 국회에서 동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개정안¹⁷⁾을 심사한 결과 회계감사의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되, 금융감독원 또는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은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상임위원회 의결('15.4.28)이 이루어졌으나, 법사위원회에서 계류¹⁸⁾된 후 임기만료로 폐기('16.5.29)된 바 있음.

17)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16.5.29

18) 당시 법사위원회에 계류되었던 농협법 개정안(대안)에는 조합에 대한 회계감사 단축 외의 다른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동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계류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2) 외부감사인 회계감사 주기 단축에 대한 검토

외부감사인 회계감사 주기의 단축은 ① 회계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건전한 조합 경영의 도모 및 ②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임.

먼저, 조합이 전문성 있는 회계법인 등에 의해 매년 회계감사를 받게 될 경우 회계감사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회계감사의 목적은 감사를 받는 조합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감사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회계감사는 통상 전·당기 재무제표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현행과 같이 4년 주기로 감사할 경우 회계감사에 대한 합리적 의견을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임.

즉, 감사의견으로는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¹⁹⁾이 있는데 전년도는 물론 지난 3개년 동안에 발생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정확한 의견 제시가 어려움 측면이 있음.

19) ①적정의견: 감사인이 감사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고 회계감사 기준에 의거해 감사를 한 결과 해당기업 재무제표가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돼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 제시하는 의견, ②한정의견: 감사인이 수행할 수 있는 감사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있지만 해당 사항이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 제시하는 의견, ③부적정의견: 기업회계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업 경영상태가 전체적으로 왜곡됐다고 판단된 경우 감사인이 표명하는 의견, ④의견거절: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한 경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객관적인 사항이 중대한 경우 또는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제시하는 의견

이에 개정안에 따라 매년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계감사의 실효성 제고로 조합의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이 강화되어 건전한 조합 경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최근 5년('17년~'22년) 동안 외부 회계감사를 수감한 조합(2,148개소) 중 한정 의견 및 의견거절을 받은 조합은 8개소로 나타났으며, 해당 조합은 관련 회계를 정리하거나 매각 등이 이루어짐²⁰⁾.

[조합 외부회계감사 수감결과]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수감대상(개소)		1,010	37	4	1	1,072	24
감사 의견	적정	1,004	37	4	1	1,070	24
	한정	6	-	-	-	1	-
	부적정	-	-	-	-	-	-
	거절	-	-	-	-	1	-

※ 자료: 농협중앙회 제출자료('25.1.20)

다음으로, 타 상호금융업권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경우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주기가 1년 또는 2년인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 고시인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²¹⁾」에

20) 세부내용은 참고자료1 참조

21)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금융위원회 고시)」 목적

1. 이 기준은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동법 제95조에 의거 신용사업을 취급하는 기관(이하 '상호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신용사업에 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의 2에 의거 상호금융기관의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으로 본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신용사업을 하는 품목조합을 포함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따르면 상호금융기관이란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에서 신용사업을 취급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통상 새마을금고도 상호금융업권으로 함께 분류되고 있음.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모두 자산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300억원 또는 500억원)이면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

감사주기는 수협²²⁾ 및 산림조합²³⁾은 2년, 신협²⁴⁾은 1년이며, 새마을금고²⁵⁾는 감사주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통상 1년에서 2년을 주기로 감사가 이루어져 왔음.

타 상호금융업권과 비교할 때 농협은 자산총액 기준과 외부감사 주기에 있어 상대적으로 가장 느슨한 규제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임.

-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 2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①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회원을 감사하여야 한다.
제169조(감독) ⑦ 조합 중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300억원) 이상인 조합은 제146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계연도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회계부정, 횡령, 배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매년 받아야 한다
- 23) 「산림조합법」 제123조(감독)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중앙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500억원)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 산림조합은 법령에서 주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조합장 임기개시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시행 중
- 24)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회계 및 결산) ⑤ 직전 연도 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300억원) 이상인 조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를 의뢰한 조합은 매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의4
- 25) 「새마을금고법」 제76조(외부 감사)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상호금융업권 외부 감사 현황]

구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법률 근거	농협법 제65조의1제1항 등	수협법 제169조제7항 등	산림조합법 제123조제4항 등	신협법 제47조제5항 등	새마을금고법 제76조제3항 등
외부감사 자산 요건	500억	300억	500억	300억	500억
도입시기	'04년	'04년	'04년	'98년	'99년
감사주기	4년	2년	2년	1년	미지정 (통상 1~2년)
감독부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시·도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 현행 법률에 따른 현황으로, '25.1.7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은 '25.7.8.부터 시행 예정

※ 자료: 국회 법률정보시스템상 관련 법령 내용 재구성

이 중 새마을금고의 경우 최근 「새마을금고법」 개정('25.1.7)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에 대해 1년 주기의 회계감사 수감이 의무화되었음. 다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그 대상은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의 금고에 한정될 것으로 보이고, 5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의 금고에 대해서는 2년 주기의 회계감사가 의무화될 예정임²⁶⁾.

신협의 경우에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조합을 제외하고 매년 1년씩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2015년부터 금융감독원 검사와 무관하게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법률이 개정²⁷⁾된 것임.

반면, 수협의 경우 2013년 임직원의 횡령사고를 계기로 조합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1년으로 규정('15.8.4.시행)하였다가 농협 및 산림

26) 개정된 법률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현재 해당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은 마련되지 않았음. 다만, '24.11.22, 행정안전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3,000억 이상은 매년, 5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은 2년마다 회계감사 수감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는 것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의 설명임. 회의록 내용은 참고자료2 참조

27)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조합은 면제하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함('15.7.21.시행)

조합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조합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조합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계연도에 외부 회계감사를 수감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20.9.25.시행)된 바 있음.

한편, 이와 관련하여 상호금융업권의 현안 논의를 위해 금융위원회, 농식품부 등 상호금융권 소관 부처와 금융감독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참석하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²⁸⁾에서도 2023년 두 차례의 회의에서 '동일업무-동일규제'의 원칙 하에 상호금융업권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1년으로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음.

[상호금융정책협의회 회의내용]

구분	내용
'23년 1차	① 상호금융권 부동산 대출 현황 및 리스크 대응 방안 ② <u>상호금융권 규제차이 개선 방안</u> → <u>상호금융업권 간 상이한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매년으로 단일화 필요</u> * 필요 시 감사대상 기준도 300억원으로 단일화 ③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 ④ 상호금융권 조직문화 개선 방안
'23년 2차	① 상호금융권 건전성 현황 점검
'23년 3차	① 상호금융기관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방안 ② <u>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 추진계획</u> → <u>상호금융업권 간 상이한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매년으로 단일화 필요</u> * 필요 시 감사대상 기준도 300억원으로 단일화 ③ 최근 상호금융업권 자금조달 운용 동향 점검
'24년 1차	①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관리 및 리스크 요인 점검 ② 불합리한 규제차이 개선
'24년 2차	①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방안 및 세부이행계획 ② 상호금융업권 주요 이슈별 현황 및 대응방안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 제출자료('25.1.20)

28)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관리 및 리스크 요인 점검, 불합리한 규제차이 개선 등 상호금융업권 현안 논의를 위해 2013년 1월에 출범한 기구로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및 유관기관인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각 상호금융 중앙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가 참석함.

이에 개정안에 따라 농협(조합)에 대한 외부 회계 감사주기가 1년으로 단축될 경우 수산업협동조합과 산림조합의 감사 주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궁극적으로 외부 회계감사의 주기에 있어 상호금융권 간 규제의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농협중앙회도 이 법 제160조제3항²⁹⁾에 따라 매년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있고, 농협은행,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³⁰⁾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으로 매년 회계감사를 받고 있음³¹⁾.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실시 현황]

구분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법률 근거	농협법 제160조제3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감사주기	1년			
감사범위	결산보고서	재무제표		

※ 자료: 농협중앙회 제출자료('25.1.20)

또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일본, 영국, 미국 등에서 농협(조합)에 대하여 매년 외부 회계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부 회계감사 요건은 각각 상이함.

29) 제160조(결산) ③ 중앙회의 결산보고서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0)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31)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세부 감사 실시현황은 참고자료3 참조

[외부회계감사 관련 해외사례]

구 분	일 본	영 국	미 국 (캘리포니아주)
외부회계감사 여부	외부회계감사 수행 (2019.10.1. 의무화)	외부회계감사 수행	외부회계감사 수행
외부감사 요건	200억엔(약1,900억원) 이상의 예금을 가진 농업협동조합(JA)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 총액이 5,100천 파운드(약 100억원) 이상 이 고 , 매 출 액 이 10,200천파운드(약20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 단, 신용조합이거나 예금을 보유한 경우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함	모든 협동조합
감사주기	매년	매년	매년
감독부처	농림수산성	Financial conduct authority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

※ 자료: 공인회계사협회 제출자료('25.1.20)

한편, 농협중앙회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조합의 평균 외부 회계감사 비용은 1회당 약 1천만원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4년에 약 3천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 경우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거나 당기순이익이 저조한 영세한 조합에는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임³²⁾.

[조합 당기순이익 현황('24년말 기준)]

당기순이익	순손실	1억미만	1억~3억미만	3억~5억미만	5억~10억미만	10억이상
조합수	52	15	50	102	332	560

※ 자료: 농협중앙회 제출자료('25.1.20)

32) 다만, 영세한 조합일수록 경영 부실 등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가 더욱 필요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2. 조합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개정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합이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4년마다 받도록 한 것에서 매년 받는 것으로 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하고 있음.

아울러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그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는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 <u>조합장의 임기 개시일 직전</u> 회계연도 말의 자산 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은 <u>그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u> 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 직전----- ----- -----매년----- ----- ----- -----.
<신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지역농협의 경우 그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지역농협의 경우 조합장 임기 중 1회에 한하여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청구한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회계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감사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하였으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지역농협의 이사회, 감사 및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관은 감사인 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도입 필요성은 인정하나, 상호금융기관에 처음 도입되는 규제로 도입 방법(전산시스템 구축 포함) 및 적용 범위 검토, 예산 확보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함.

2) 금융위원회

도입에는 동의하나 향후 업권에 발생할 영향, 제도의 실질 운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3) 농협중앙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주기적 지정제도와 비교하여 경영방식이나 규모가 상이한 조합에 대해 일괄적으로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고, 감사보수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 잦은 감사인 교체에 따른 감사품질 저하 등 우려가 있음.

4) 공인회계사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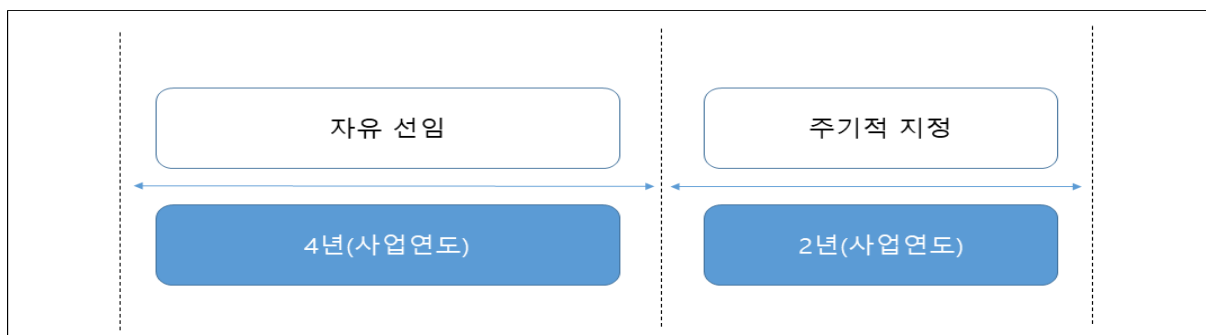
자기 자신을 감사할 감사인을 피감기관이 직접 선정하는 자유선임제로는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도입이 필요함.

나. 검토의견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현황 및 개정안의 취지

개정안은 외부 회계감사 주기의 단축과 아울러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그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는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 자료: 농협중앙회 제출자료('25.1.20)

현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³³⁾에 따르면 감사인 지정제도는 직권 지정제도와 주기적 지정제도로 구분할 수 있음.

직권 지정제도는 선임기한 내 감사인 미선임,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잦은 변경, 횡령·배임 발생 등의 사유로 회계부정 위험성이 큰 법인에 대하여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임.

반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는 회계부정 발생 시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인이 특정 감사인을 오랜 기간 유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감사의 독립성 저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임.

33)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 제10조에 따른 감사인의 선임기간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2. 제10조에 따른 감사인의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3.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인 교체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회사

4.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이 확인된 회사는 제외한다.<후 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운데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제26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를 받은 회사로서 그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
2. 그 밖에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감사인 지정제도 비교]

구 분	직권지정	주기적지정
근거법령	외부감사법 §11①	외부감사법 §11②
목적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감사품질 개선
지정사유	-회사의 요청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감사인 부당교체 -감리결과 조치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 -3년간 최대주주(2회↑)or대표이사(3회↑) 변경 -횡령·배임 발생 등	1.주권상장법인 2.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①직전사업년도말 자산5천억원 이상으로서 ②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50%이상이고, ③지배주주(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지정기간	3개 사업연도의 범위	6개 사업연도(자유선임) + 3개 사업연도(3년지정)
지정 예외사유	-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를 받은 회사로서 그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 자료: 국회 법률정보시스템상 관련 법령 내용 재구성

감사인이 감시자(watch-dog)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면 피감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감사인을 선정하는 권한이 계속해서 피감기관에 주어질 경우 감사인이 피감기관에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회계감사상 발견된 문제점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음.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할 경우 조합이 자유 선임한 감사인이 결과적으로 지정 감사인에 의해 사후 검증을 받게 되므로, 감사의 품질 제고로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2) 조합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개정안 심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이후 기업의 가격협상력 약화로 인한 회계감사 비용의 증가 및 기업의 감사인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에서도 일부 보완책을 마련 중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명확하지 않은 우리나라 기업 특성을 감안³⁴⁾하여 2017년 10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통해 최초 도입되어 2019년 11월부터 시행되었음³⁵⁾.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적용을 받는 회사는 주권상장법인³⁶⁾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³⁷⁾로 해당 회사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 선임할 수 있고,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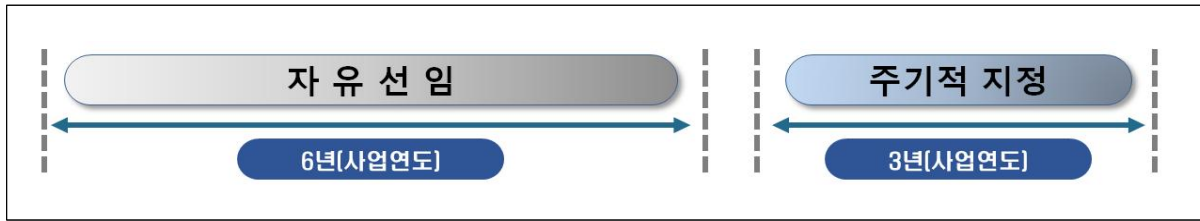
34)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유일함.

35) 당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등을 계기로 회계투명성 제고 및 감사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전부개정이 이루어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이 도입되었음.(국회입법조사처, 감사인 지정제도의 쟁점 및 개선과제, 2023.4.25)

36) 주권상장법인이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주주의 출자에 대하여 교부하는 유가 증권)을 발행한 법인(코넥스 제외)을 의미함.

37) ①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5천억 이상(다만, 사업보고서 제출 또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1천억원)인 비상장회사로서 & ②지배주주·특수관계자 지분율이 50% 이상 & ③지배주주·특수관계자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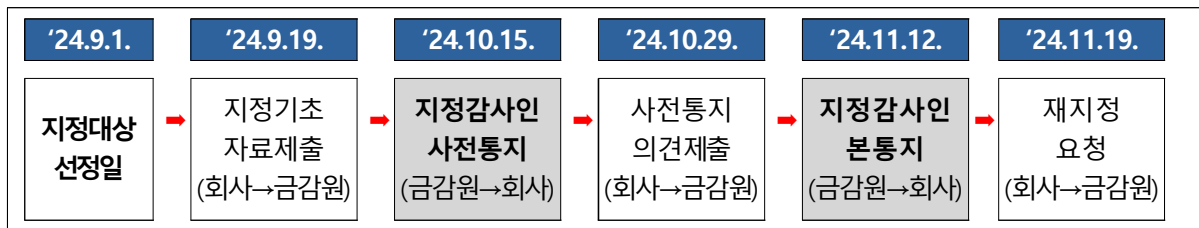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 자료: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4. 12

실제로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 지정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이 매년 감사인 등록을 받아 해당 감사인의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해 점수를 산정한 후 피감대상 법인의 자산규모에 따라 높은 점수의 감사인에게 순차적으로 배정하고 있음.

[결산법인에 대한 2024년 지정 일정]



※ 자료: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4. 12

현재 공익법인 등과 사립학교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적용을 받음.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민간협의회에서 공익법인과 사립대학 등도 감사인 지정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 것임³⁸⁾.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과 달리 4년 동안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후 2년 동안 기획재정부(국세청) 또는 교육부(한국사학재단)로부터 감사인의 지정을 받게 됨.

38)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는 참고자료4 참조

[주기적 지정 감사인제도 운영 현황]

구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립학교법
근거규정	법§11②	법§50④ ³⁹⁾	법§31⑤ ⁴⁰⁾
대상	상장법인 및 일부비상장법인 ※①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5천억 이상인 비상장회사로서 & ②지배주주·특수관계자 지분율이 50% 이상 & ③ 지배주주·특수관계자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공익법인등 ※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개정일	2017.10	2019.12	2021.8
적용시기	2019.11	2022.1	2022.2
지정주기	6년자유선임+3년지정	4년자유선임+2년지정	4년자유선임+2년지정
수행기관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위탁	기획재정부가 국세청에 위탁	교육부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

※ 자료: 국회 법률정보시스템상 관련 법령 내용 재구성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으로 2020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회계투명성 순위가 15단계 상승(61위→46위)하고 현재도 40위권을 유지하는 등 회계투명성이 제고된 것은 고무적인 성과로 보임.

[IMD 회계.감사 평가 및 종합 평가 순위(약 63개국)]

구분	'17	'18	'19	'20	'21	'22	'23	'24
회계.감사평가	63	62	61	46	37	53	47	41
종합평가	29	27	28	23	23	27	28	20

※ 자료: 2024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IMD

- 39)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 연속하는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2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인 지정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40)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선정한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
 2. 제1호에 따른 회계연도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 이 경우 동일한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한다.

다만, 동 제도는 도입 당시 학계 및 기업계는 물론 금융당국조차도 동 제도 도입 시 각 회사의 가격협상력이 약화되어 회계감사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감사인 간 자유경쟁이 제한되어 품질 향상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었음⁴¹⁾.

제도 운영 결과 상장회사 중 지정감사를 수감하는 기업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짐(50% 내외)에 따라 감사인 간 품질경쟁 저하와 감사보수 증가 문제가 대두됨. 또한, 모든 기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음.

2023년 4월 감사원 감사 결과⁴²⁾에 따르면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던 회사가 주기적 지정대상이 되면 시간당 감사보수가 전년 대비 평균 23.1% 증가하는 등 주기적 지정 도입 이후 회사의 감사보수가 실제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감사인 선임방법 변경 1년차의 감사보수 증감 현황]

(단위: 개, 억 원, 만 시간, 만 원)

감사인 선임방법	대상 회사수	연도	총감사보수	총감사시간	시간당 감사보수(증가율)
자유 선임 → 주기적 지정	214	'19~'20년	586.97 → 892.13	70.06 → 87.56	8.38 → 10.19 (21.6%)
	218	'20~'21년	190.84 → 325.76	23.20 → 28.27	8.23 → 11.52 (40.1%)
	174	'21~'22년	564.62 → 814.53	59.84 → 72.43	9.43 → 11.24 (19.2%)
증가율(평균)			51.4%	23.0%	23.1%

※ 자료: 감사원의 금융감독원 정기감사 결과('23.4.4., 감사원 홈페이지)

4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대표발의, 2016.11.11) 검토보고 p. 27

42) 감사원이 금융감독원 감사 후 금융위원회에 발송한 통보서(「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제외 대상의 실효성 부족」)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상황 인식을 토대로 기업계, 회계업계, 학계 등 관계기관⁴³⁾이 참여하는 ‘회계개혁 평가·개선추진단(TF)’을 구성하여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음.

이후 금융위원회는 추진단의 논의와 학계의 연구결과⁴⁴⁾ 등을 종합하여 2023년 6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는 아직까지 정책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불충분한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되,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확보 시점에 개선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발표하였음⁴⁵⁾.

또한, 2024년 12월에는 모든 상장기업이 1회 이상 지정되는 2028년까지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을 유예하는 한편 2028년에 원점 재검토를 실시하여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음.⁴⁶⁾

따라서 농협(조합)의 외부 회계감사에 대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책효과 분석과 감사인 지정이 필요한 적정 범위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당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 계기가 소수의 대주주

43) 금융위, 금감원, 상장회사협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영회계법인, 우리회계법인, 시립대·중앙대·고려대 교수 참여

44) 회계개혁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2023, 한국회계학회, 정석우·황문호·오명진·최승욱) 결과, 주기적 지정 이후 지정기업의 감사품질 향상

45)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금융위원회, 2023. 6.

46)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4. 12

가 소유하는 대기업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분식회계 등 회계 부정 사건 때문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소유권 및 의결권이 분산되어 있고 대표 역시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농협(조합)의 경우에는 조직적인 회계부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도 일부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주식회사와 조합의 소유권 등]

구 분	주식회사	농협(조합)
소 유 권	▶ 소수의 지배대주주 존재	▶ 소유권이 폭넓게 분산
의 결 권	▶ 1주1표제, 의결권이 집중 -소수에 의한 기업지배	▶ 1인1표제, 의결권이 분산 -다수에 의한 기업지배
주주자격	▶ 제한없음	▶ 농업인
대표선임	▶ 대주주에 의해 선임	▶ 선거에 의해 선출

※ 자료: 농협중앙회 제출자료('25.1.20.)

둘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는 상호금융권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농협 외에 신탁,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 타 상호금융권에 대한 도입 논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셋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이 결정된다면 적용 대상의 적정 범위 및 주기의 적정 수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① 먼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자산총액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조합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적정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현재 개정안에 따라 매년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

는 자산총액 규모 500억원 이상인 조합은 전체 1,111개소로,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조합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반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는 매년 외부감사인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 중 ① 주권상장법인 및 ②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로 ②의 경우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이에 따르면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4만 1,000여 개의 회사 중 1,600개(3.9%)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임.

또한, 금융감독원의 2025사업연도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 통지⁴⁷⁾에 따르면 지정 대상 1,600여개 중 2025년에 506개의 회사가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 통지받았음.

금융감독원은 ① 주권상장법인 178사와 ②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184를 신규 지정(322개사는 기 지정)하였는데, 이 중 신규 지정 상장사의 평균 자산규모는 1조원(유가증권시장은 평균 2.2조원, 코스닥시장은 2,830억원)으로 나타남.

공익법인⁴⁸⁾ 및 사립학교법인⁴⁹⁾의 경우에도 각각 매년 외부감사인인

47)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 2024.10.18.

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 연속하는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2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인 지정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3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① 법 제50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중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의 법인에 대해서만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주기적 지정 감사인제도 지정 대상]

구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적용대상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①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5천억 이상인 비상장회사로서 & ②지배주주·특수관계자 지분율이 50% 이상 & ③ 지배주주·특수관계자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등	자 산 규 모 1,000억원 이상 사립 학교법인	
매년 회계감사 대상수(A)	4만 1,000여개	2,000여개	300여개	1,111개
주기적 지정감사제도 대상수(B)*	1,600여개	140여개	190여개	1,111개
지정감사비율 (B/A)	3.9%	7%	63.3%	100%
지정 현황**	'25년 기준 506개사 (상장 477, 비상장29)	'22년 기준 24개	'25년 기준 26개	-

* 매년 회계감사 대상수 및 주기적 지정감사제도 대상수는 공인회계사협회 제출자료('25.1.14.)

** 지정 현황은 금융위 보도자료 및 유선질의 등 참고

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후 략>

49)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선정한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

2. 제1호에 따른 회계연도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 이 경우 동일한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한다.

제14조의2(지정외부감사대상 학교법인 및 지정외부감사인) ① 법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학교법인 중에서 법 제3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학교법인을 선정해야 한다.

1. 선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2월 말일 현재 합산재무상태표[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육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회계를 모두 합한 것으로 한다)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업무회계를 하나의 회계단위로 작성한 표를 말한다]의 **총자산가액이 1천억원 이상인 학교법인**<후 략>

이에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농협(조합) 전체를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 입법례와 비교할 때 과도해 보이므로 적정 자산규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5,000억원 이상의 조합은 전체 조합('24년 말 기준 1,111개소)의 25%인 311개소, 3,000억원 이상은 516개소(43%), 1,000억원 이상은 1,067개소(78%)로 나타남.

[자산총액별 조합 현황('24년말 기준)]

구분	조합 갯수	누적 갯수	누적(%)
5조 이상 6조 미만	1	1	0.0
4조 이상 5조 미만	1	2	0.0
3조 이상 4조 미만	9	11	0.2
2조 이상 3조 미만	15	26	0.7
1조 이상 2조 미만	113	139	3.5
9천억 이상 1조 미만	24	163	6.6
8천억 이상 9천억 미만	22	185	10.2
7천억 이상 8천억 미만	26	211	14.3
6천억 이상 7천억 미만	38	249	19.2
5천억 이상 6천억 미만	62	311	25.2
4천억 이상 5천억 미만	92	403	33.0
3천억 이상 4천억 미만	113	516	43.1
2천억 이상 3천억 미만	238	754	57.7
1천억 이상 2천억 미만	313	1,067	78.4
500억 이상 1천억 미만	44	1,111	100
계	1,111	1,111	100

※ 자료: 농협중앙회 제출자료('25.1.20)

② 다음으로, 지정 주기를 상장회사등과 같이 6년 자유선임 및 3년 지정(6+3)으로 설정할 것인지, 공익법인이나 사립학교법인과 마찬가지로 4년 자유선임 및 2년 지정(4+2)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공익법인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할 당시 개정안의 제안 이유⁵⁰⁾에 따르면 상장법인등보다 지정 주기를 단축하여 규정한 것은 공익법인의 경우 영리법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 및 공익성이 요구된다고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됨. 사립학교법인 역시 공익법인과 유사한 수준의 투명성 및 공공성이 요구된다고 보았음⁵¹⁾.

이에 감사인 지정 주기는 농협(조합)에 요구되는 공익성 및 공공성 등의 수준을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③ 마지막으로, 개정안 수용 시 법 시행 이후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의 산정과 관련하여 법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어 보임.

즉, 연속하는 회계연도의 산정 시 시행일 이후의 회계연도부터 시작

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대표발의, 2018. 9. 13.) 제안이유: 주권상장법인 등 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지난 2017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한 점을 감안할 때, 영리법인보다 더 엄격한 투명성과 공익성이 요구되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보다 철저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실있는 감사제도의 도입이 시급함.

5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대표발의, 2020. 9. 29.) 검토보고서 내용 중: 유사한 사례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영리법인에서도 시행 중에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에 따라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해당 제도를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할 때, 영리법인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공공성이 요구되는 대학법인에 대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할 것인지 시행일 이전의 회계연도도 포함하도록 할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사립학교법」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시 연속하는 회계(사업)연도 산정 시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회계(사업)연도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타 법 부칙상 적용례 규정]

외부감사법 부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사립학교법 부칙
제8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지정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u>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산정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u>	제7조(공익법인등의 회계감사의무에 관한 적용례) ② 제5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u>연속하는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산정은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u>	제4조(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5항·제6항·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u>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의 산정은 같은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u>

문 의 처

02)6788-5415

참 고 자 료

참고 1

한정의견 및 거절의견 조합 조치 결과

연도	농축협	구 분	의견 사유	조치 결과
2017	00 농협	한 정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및 지분법 피투자회사 지급보증에 대한 근 거자료 불충분	출자금('18.12.09.) 및 대여금 ('18.06.01.) 정리 완료
	00 축협	한 정	감사인 변경으로 기초재고자산 실사에 입회 못하였으며, 대체적 인 방법에 의해서도 수량에 의 한 확인을 얻지 못함	회계감사 기간 중('17.08.14.) 회 계감사인 중도 사임으로 인해 발 생된 사안으로 향후 회계감사인 선임에 철저를 기함
	00 농협	한 정	소송관련 채권에 대한 계정분류 오류	'18년 재판 결정(소송패소)에 따 라 '18.12.31.일자로 정리 완료
	00 농협	한 정	명예퇴직금 및 일반퇴직급여 기 간귀속오류, 업무용부동산 손상 처리 부적절	퇴직급여 재계산 및 추가 적립, 업무 용부동산은 손상차손 기표 후 매 각 완료
	00 농협	한 정	소송판결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 에 반영해야 할 사항 미반영	기타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 완 료
	00 농협	한 정	명예퇴직금 및 법인세추징액 기 간귀속 오류	당기 발생 비용은 당해연도 예산 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당해연도 미지급비용 잔 액 확인 철저
2021	00 농협	거 절	횡령 시재금에 대한 재무제표 에 미칠 영향에 대한 완전성, 회수가능성 등	경기 검사국에서 감사 실시하였으 며, 관련 직원 변상 등으로 정리 ('22년)
	00 농협	한 정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회 계처리와 영농법인(피투자법인) 의 회계처리 불일치	매각 진행 중('25. 7월 예상)

※ 자료: 농협중앙회 제출자료('25.1.20)

참고 2 2024.11.22, 행정안전소위 회의록

58 제418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4년11월22일)

합니다. 금고에 있어서는 현행은 자산 500억 원 이상 금고 등 행안부장관의 명령 시 외부감사가 실시됩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 매년 1회 이상 외부감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 규정과 별개로 이미 자산 3000억 원 이상 금고는 매년, 3000억 원 미만 500억 원 이상 금고는 2년마다 외부감사를 실시 중이고 농협·수협은 외부감사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현행 행안부장관의 외부감사 명령권을 삭제하고 있는데 외부감사 비의무 금고에 대해서는 명령권을 계속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은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128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3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는 매년 외부감사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수정의견으로 기존 외부감사 명령권도 비의무 금고에 대해 필요할 수 있도록 존치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매년 외부감사를 하게 됩니까, 금고가?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일정 규모 이상은 하게 됩니다, 3000억 이상.

○위성곤 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농협이나 수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금고중앙회에서 오신 분.

○소위원장 윤건영 여기 적혀 있습니다. 농협·수협 다 하고 있는……

○위성곤 위원 매년 하고 있나요?

○이달희 위원 수협은 2년, 농협은 조합장 임기 중 1회.

○위성곤 위원 농협은 자산 500억 이상인 경우 조합장 임기 중에 1회, 수협은 2년.

○조승환 위원 지금 300억하고 3000억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지금 3000억 미만 500억 이상은 2년마다 실시하고 매년 실시하는 건 3000억 이상이고요. 이게 아마 조합 규모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양부남 위원 3000억 이상이면 매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큰 규모니까.

○위성곤 위원 금고중앙회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전무이사 황길현 행안부하고 저희 의견 같이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3000억 이상은 매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고는 2년에 1회 하는 것으로 저희랑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적절해 보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전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달희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것은 합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 3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사 현황

< 중앙회에 대한 감사실시 현황 >

구분	외 부				내 부
	국정감사	농식품부	금융감독원	외부회계감사	감사위원회
근거 규정	헌법 §61 국회법 §12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7 III	농협법 §162 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7·§38	농협법 §160 ③	농협법 §129
대상	중앙회	중앙회	중앙회 (상호금융)	중앙회	중앙회
감사 주기	1년	3년	-	1년	상설기구
감사 범위	업무전반	업무 및 재산상황	업무 및 재산상황	결산보고서	재산과 업무집행상황
24 년 수감 현황	기관감사(1회) 종합감사(1회)	수감	미수감 '23년 수감	결산감사(1회)	정기·수시

< 경제지주에 대한 감사실시 현황 >

구분	외 부				내 부
	국정감사	농식품부	외부회계감사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
근거 규정	헌법 §61 국회법 §12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7 III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별표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농협법 §142의2	농협경제지주 정관 §36~38 감사규정
감사 주기	1년	3년	1년	2년	정기·수시
감사 범위	감독을 받는 범위 내의 업무전반	협약내용 이행사항확인 등	재무제표	업무수행의 회원 및 조합원 기여여부	재산상태, 업무집행상황
24 년 수감 현황	기관감사(1회) 종합감사(1회)	'22농경 '23축경	결산감사(1회)	수감	정기·수시

< 금융지주에 대한 감사실시 현황 >

구분	외 부					내 부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외부회계감사	중앙회	자체감사
근거 규정	헌법 §61 국회법 §12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7Ⅲ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별 표 3>	금융지주회사법 §5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농협법 §142의2	농협금융지주 정관 §46조의1
대상 농협	농협중앙회 (지회사·손자 회사 등 포함)	농협금융지주 및 자회사	농협금융지주 (지회사·손자 회사 등 포함)	농협 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및 자회사	농협금융지주 및 자회사
감사 주기	1년	-	정기·수시	1년	2년	정기·수시
감사 범위	감독을 받는 범위 내의 업무전반	협약내용 이행사항확인 등	업무와 재산	재무제표	업무수행의 회원 및 조합원 기여여부	회계와 업무, 재산상태
24년 수감 현황	기관감사(1회) 종합감사(1회)	-	수시검사(1회) 정기검사(1회)	결산감사(1회)	-	정기·수시

< 농협은행에 대한 감사실시 현황 >

구분	외 부					내 부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외부회계감사	농협중앙회	자체감사
근거 규정	헌법 §61 국회법 §12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7Ⅲ	농업협동조합 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별 표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7·3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농협법 §142의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9·20
감사 주기	1년	-	정기·수시	1년	-	정기·수시
감사 범위	감독을 받는 범위 내의 업무전반	협약내용 이행사항확인 등	업무 및 재산상황 또는 특정부분	재무제표 (별도, 연결)	업무수행의 회원 및 조합원 기여여부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
24 년 수감 현황	기관감사(1회) 종합감사(1회)	-	정기검사(1회) 수시검사(11회) 서면(2회)	결산감사(1회)	-	정기·수시

※ 자료: 농협중앙회 제출자료('25.1.20)

청 럽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공익법인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공익법인, 사립대학,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강화하여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회계부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1. 회계감사를 받는 대상이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기관 또는 제3의 기관이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외부감사인 풀(pool)을 구성하여 무작위 배정 등 객관적인 방식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감사인 지정제를 시행한다.
2. 부정·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사결과에 비영리법인 등의 특성을 고려한 재무제표 외의 추가적인 확인사항을 함께 기재한다.
3. 회계감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4. 위 방안은 현재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 사립대학을 설치한 학교법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우선 적용하되, 추후 다른 분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한다.

2018년 11월 2일